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23-914

2023

사례로 펼쳐가는 어린이집 평가제

KCPI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CONTENTS

2023 사례로 펼쳐가는 어린이집 평가제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1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7

3 건강·안전 ····· 13

4 교직원 ····· 35

어린이집 평가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자 현장평가에서 다수 발생되는 평가기준 미충족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로 펼쳐가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023 보육사업안내를 토대로 주요내용, 어린이집 주요 사례, 핵심체크의 구성으로 어린이집 평가준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가독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참고용 자료이므로 법령이나 매뉴얼과 다를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문의 후 법령과 매뉴얼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어린이집 주요 사례는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는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집이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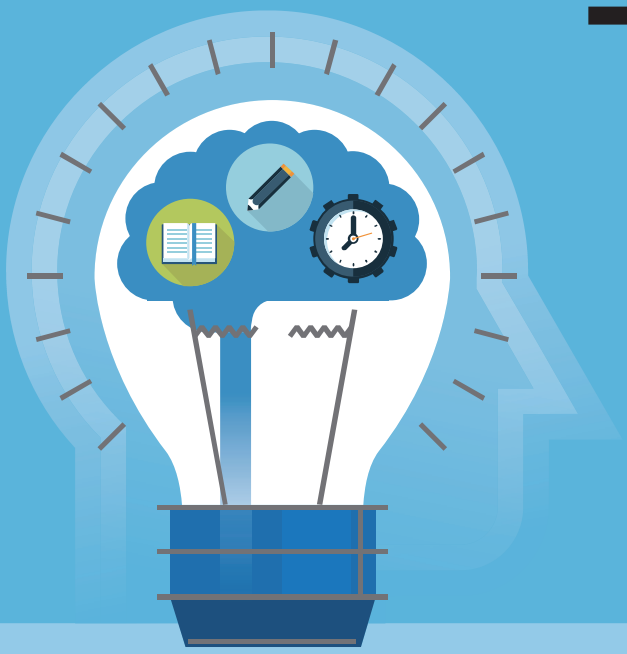

어린이집에서는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보육철학을 수립하여 양질의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에게 편안한 일상생활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여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1영역에서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놀이 및 활동 지원,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보육과정 평가 등 총 5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1 1-2-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요내용

☑ **1-2-3-① 매일 실내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실내 놀이를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실시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내 놀이시간을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음.
- 실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 놀이시간을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외놀이 시간을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음.

주요사례

① 오전 실내놀이가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동안 운영됨.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오전 실내놀이는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매일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정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제 놀이가 이루어진 시간은 보육일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② 숲 체험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놀이시간이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으로 운영됨.

유아반에서 놀이시간은 총 3시간(실내놀이 2시간, 실외놀이 1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숲 체험 어린이집과 같이 실외놀이를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바깥놀이 1시간과 별도로 실내놀이를 대체하는 실외놀이 시간도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핵심체크

- **전이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실내놀이를 매일 1시간 이상 운영하고, 보육일지에 기록하였나요?** ☐
- **실외놀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어린집의 경우, 실외놀이를 매일 오전·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나요? 오전 실외놀이는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2 1-2-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주요내용

☑ **1-2-4-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영아: 만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 만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 유아: 매일 1시간 이상
  - 장애아전문: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날씨와 기상현상으로 인해 바깥놀이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융통성 있게 실내 대체활동을 마련하여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주요사례

① 특별활동 시 대근육 활동(체육, 음악 관련)을 실외 놀이 시간으로 합산하여 계획 및 운영함.

바깥놀이는 영유아가 일과 중에 실내를 벗어나 실외에서 자연을 경험하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활동에서 대근육 활동을 하더라도 바깥놀이는 특별활동 시간과 별도로, 기준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바깥놀이를 계획·실시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정될 수 있습니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바깥놀이를 전혀 하지 않고 대체활동으로만 진행함.

황사, 미세먼지, 폭염 또는 한파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육일지에 바깥놀이가 불가능했던 이유와 실행 내용을 기록하고 대체활동(대근육 활동 또는 실내 놀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만 진행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체크

특별활동(대근육 활동) 시간을 제외하고 바깥놀이를 기준 시간 이상 계획, 실시하였나요? ☐

날씨와 기상현상 등으로 바깥놀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융통성 있게 실내 대체활동을 실시하며, 대체활동 실시사유와 실행내용이 보육일지에 기록되어 있나요? ☐

3 1-2-5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주요내용

☑ **1-2-5-①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 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요청)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동의서에는 필요한 정보(프로그램명, 영유아의 이름, 참여 동의 여부, 부모서명)가 누락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음.

주요사례

①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의 특별활동 운영 시 운영위원회 심의기록이 없음.

특별활동이란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보육과정 외 활동프로그램으로,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2023 보육사업안내 96p 참조) 심의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②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부모동의서는 없으나 참여를 원하는 영아에게 특별활동을 실시함.

특별활동은 기술연마,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영아가 참여를 원한다 하여도 부모동의서를 구비하지 않은 원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대신 4차 표준보육과정에 기반을 둔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합니다.(2023 보육사업안내 96p 참조)

핵심체크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기록이 있나요? 해당 영아의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부모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나요? ☐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만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나요? ☐

4 1-5-2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주요내용

☑ **1-5-2-①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 영유아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음.
-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짐.
  ※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이내 실시기록 확인
  ※ 검토기간 내 일상생활, 놀이를 모두 포함하여 관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평정

주요사례

① 영유아 관찰일지에 일상생활 관련 기록이 누락됨.

대부분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되므로 영유아별 발달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내놀이 및 바깥놀이 시 뿐만 아니라 급·간식, 낮잠, 배변, 위생습관과 같은 일상생활의 관찰도 필요합니다. 영유아별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되, 3개월의 관찰일지를 취합했을 때 놀이 및 일상생활이 누락 없이 고르게 관찰,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영유아 관찰일지에 활동사진, 활동 결과물 사진만 부착함.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변화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관찰일지에 활동사진 및 활동 결과물 사진만 부착한 경우 관찰일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활동사진 및 결과물 사진을 활용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관찰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체크

영유아별 관찰일지에 일상생활, 놀이에 대한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

모든 영유아의 관찰이 월 1회 이상 이루어지고 그 기록을 관리하고 있나요?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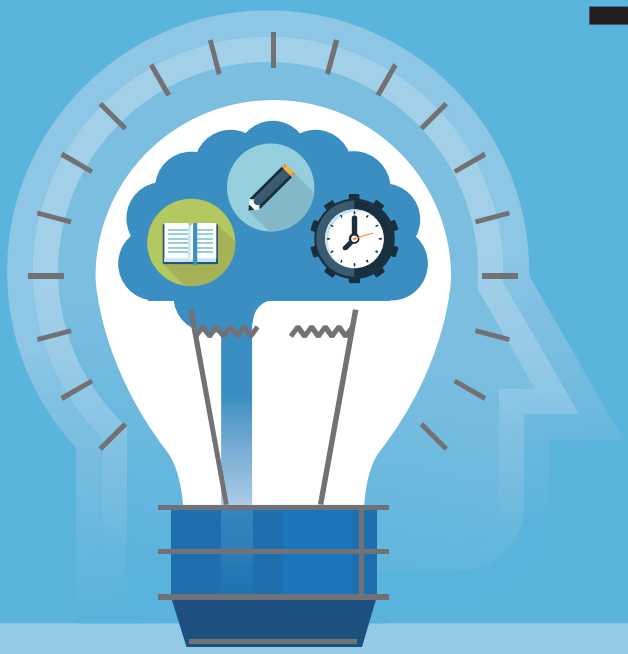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 시설 및 설비는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 흥미와 요구에 적합하고, 놀이 및 활동,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운영계획, 원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영역에서는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기관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총 4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1 2-1-2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

주요내용

☑ **2-1-2-①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 영유아용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하고, 영유아 스스로 사용 가능함.
- 실내 외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설비 및 가구 등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함.
-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임.

주요사례

① 가정어린이집에서 성인용 세면대와 변기를 사용하나 안전발판을 하나만 마련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일상생활 설비는 영유아의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여야 합니다.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와 성인용 세면대를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보조변기와 안전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발판은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에 각각 마련해야합니다.

② 성인용 변기에 보조변기와 안전발판이 마련되어 있으나, 교사가 일과 내내 모든 영아를 안아서 변기에 앉혀줌.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를 사용할 때에는 보조변기와 안전발판을 활용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보조변기와 안전발판이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일과 내내 교사가 일방적으로 영유아를 안아서 변기에 앉혀주거나 보조변기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평정합니다.

핵심체크

-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와 성인용 세면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발판을 각각 마련하였나요?** ☐
-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를 사용할 때, 영유아용 보조변기와 안전발판을 활용하나요?** ☐

2 2-1-3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내용

☑ **2-1-3-①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음**

- (유희실)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고,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놀잇감 등이 비치되어 있음.
- (도서공간) 영유아가 그림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책꽂이와 의자(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음.
- (양호공간)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양호공간이 어린이집 내(원장실 등)에 마련되어 있고, 공간 내 비상약품, 간이침대(매트) 등이 비치되어 있음.

주요사례

① 지하층에 유희실을 마련함.

영유아 안전을 고려하여, 화재 등 비상 시 취약할 수 있는 지하층은 2010년 1월부터 보육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지하층에 설치된 보육실, 유희실, 실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고, 보육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② 별도의 공간으로 유희실 한쪽에 책장을 마련함.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영유아별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보육실 외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서공간은 영유아가 그림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책꽂이와 의자(소파)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희실 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유희실 일부 공간에 도서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간이 유희실과 독립된 공간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책꽂이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매트, 소파 등 비치)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지하공간, 미인가 공간에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는 않았나요? ☐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공간, 식당 등)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을 마련하였나요? ☐

3 2-3-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주요내용

☑ **2-3-2-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 어린이집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영유아의 희망 등·하원 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함
  - 수요조사서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부모가 작성한 희망 등·하원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함.

주요사례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서의 '희망 보육시간대' 응답란이 체크박스 형식 (ex. 9:00~16:00, 9:30~16:30, 10:00~17:00)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요조사는 양육아의 보육수요를 파악해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비양육자의 보육수요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신학기 시작 시 희망 등·하원시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요조사 시,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 보육시간대를 체크박스의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 제시된 시간 외 응답이 불가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에 수요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희망 보육시간대'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2023년 보육사업 안내)
○ (개요)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조사 후 이를 반영하여 운영계획 수립, 안내해야 함
○ (절차) 신학기 시작 시 서면으로 희망 등·하원 시간을 포함한 수요조사 실시, 희망 등·하원시간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서면 수요조사 즉시 실시
○ (활용) 수요결과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교사배치, 하원시간대별 아동현황,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
* 서식: 2023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서식 Ⅱ-1-1 참조

핵심체크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서 양식이 구성되어 있나요? ☐

매년 모든 원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고 있나요? ☐

4 2-4-2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

주요내용

☑ **2-4-2-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내용을 기록, 관리함**

-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학기 당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
  - 개별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
  - 대면면담이 원칙이나, 대면면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으로 진행 가능함.
    ※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주요사례

①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 개별 면담을 실시함.

부모와의 개별면담은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양육 및 지원방법에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원장보다는 개별 영유아를 직접 보육하고 발달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부모와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일부 영유아에 대해 부모와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음.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의 긍정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대면면담을 거부할 경우, 유선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실시 기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평가당일 기준 퇴소한 영유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체크

- **부모 개별면담을 담임교사가 연 2회 이상 진행하였나요?** ☐
- **부모 개별면담 관련 문서에 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

3

건강·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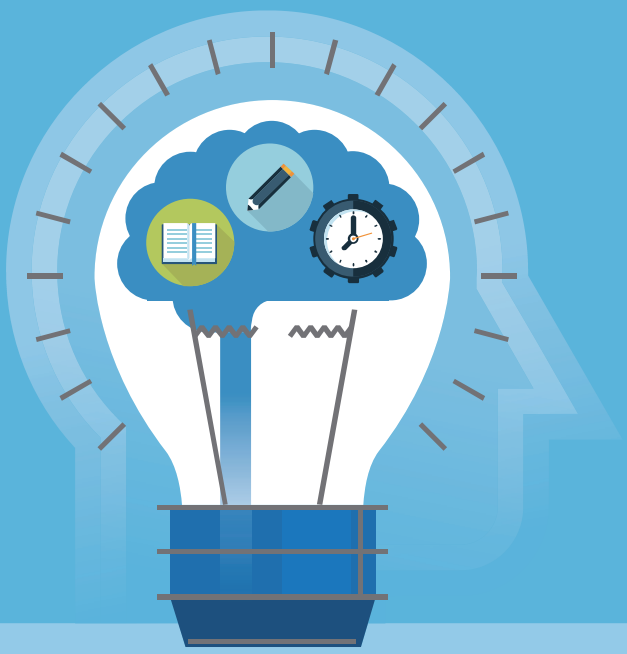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은 영유아가 신체적 상해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임, 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3영역에서는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급·간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등·하원의 안전,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등 총 5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1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주요내용

☑ 3-1-1-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현관, 복도, 유희실, 계단 등)이 찌든 때, 먼지, 해충 등이 없이 청결함.
-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 변기, 휴지통 등이 청결하며, 수건은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됨.
- 기저귀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기저귀 갈이대, 화장실)에서 갈아줌.
- 기저귀 가는 공간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할 때마다 소독함.
  - 개별 영아의 기저귀 갈이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기저귀 갈이대를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 이동식 변기는 사용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주요사례

① 보육실에서 팬티형 기저귀 갈이 후 바닥을 닦지 않음.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화장실이 아닌 보육공간(보육실 등)에서 기저귀를 간다면 바닥에 오물이 묻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영아가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하며 별도 기저귀 갈이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저귀 갈이 후에는 반드시 보육실 바닥을 닦아야 합니다.

② 변기에 오물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화장실 및 세면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2명 이상의 영유아가 변기를 연속으로 사용하였으나 물을 내리지 않아 오물이 방치된 경우 청결 미흡으로 평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변기사용 후에는 물을 내리도록 지도하여 영유아가 청결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 **보육실 및 실내공간, 실내공간에 비치된 설비와 비품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나요?** ☐
- **기저귀 가는 공간이 청결하고,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나요?** ☐

2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주요내용

☑ **3-1-1-④ 실내외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 어린이집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의 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시킴.
-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필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함.
- 보육실 및 실내공간은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하여 실내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은 자연채광이 충분하며,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제대로 작동함.
  - 창문의 2/3 이상이 불투명 썬팅지, 가구, 적재물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자연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함.

주요사례

① 보육실 창문에 불투명 선팅이 2/3 이상으로 자연채광이 미흡함.

영유아의 건강과 긍정적 정서발달을 위해 보육실과 실내공간은 자연채광이 충분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창문에 불투명 선팅지가 과도하게 부착되어 있어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빛이 투과되는 한지, 반투명 유리창 등은 자연채광이 일부 가능하므로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② 보육실 외부로 난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우나 공기청정기를 마련하지 않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할 수도 있으나 미세먼지 '나쁨'이상이거나 외부로 연결된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설치, 작동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창문에 과도하게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커튼(블라인드), 적재물 등이 있어 자연채광을 방해하지 않나요? ☐

환기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구비, 작동하고 있으며 필터를 청결하게 관리하나요? ☐

3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주요내용

☑ **3-1-2-①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현관문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음.
- 출입문(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있음.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창문(2층 이상)에는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계단, 화장실, 세면장 등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주요사례

① 현관문에 개폐장치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하루 종일 잠겨있지 않음.

어린이집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현관문에는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하루전반에 걸쳐 잠겨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단의 창문 높이가 지면에서 120cm 미만이나 창문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음.

영유아 추락방지를 위해 2층 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120cm 미만인 창문에는 창문보호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창살로 된 보호대라면 영유아 창살 사이로 추락하지 않도록 창살 간 간격은 10cm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더불어 창문을 고정하는 슬라이드락의 경우, 영유아가 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창문보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체크

- **현관문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하루 종일 잠겨있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
- **창문하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미만인 창문(2층 이상)에 창문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

4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주요내용

☑ **3-1-2-②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보육실 및 실내공간의 고정식 시설·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실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
-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 전선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주요사례

① 이동식 전기 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가 있음.

전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모든 전기콘센트는 안전덮개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식 콘센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아노, 교구장 등으로 가려져 있어 영유아의 손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전기콘센트의 경우에는 감안하여 평정하고 있습니다.

② 영유아 손닿는 곳에 설치된 칫솔소독기의 모서리가 날카로워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음.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 생활동간 내 가구나 설비는 파손되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곳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손이나 머리가 닿는 곳에 설치된 칫솔소독기 같은 설비의 모서리가 날카롭다면 영유아가 부딪혀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해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보육실 및 실내공간의 시설·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나요? ☐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 전선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나요? ☐

5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주요내용

☑ **3-1-2-④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

- 원장실, 교사실 등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음.
-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출입문, 분리막 등을 닫아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어린이집 구조상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주요사례

① 조리실에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하루 종일 열려있음.

조리실은 화기 등으로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조리실 문을 항상 닫아두어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조리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문이 열려있다면 영유아의 출입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② 원장이 영아를 데리고 조리실을 출입하는 경우가 있음.

화기 노출로 화상사고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조리실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더라도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간식준비 시간 등에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안고 조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체크

- 조리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의 출입문이 닫혀 있나요? ☐
- 위험요인이 있는 조리실에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

6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내용

☑ **3-2-1-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존식을 보관함**

- 영양사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를 사용하고 있음.
  -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월령,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이유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실제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는 계획된 식단과 일치함.
-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존식은 영아 18℃ 이하의 상태로 보관 시간(144시간)을 준수하여 매회 1인분(150g 이상 보관 권장) 분량을 보관하고 있음.
  - 제공된 급·간식(이유식 포함) 모두 보존식을 보관해야 함.
  - 보존식 보관 여부는 집단급식소로 신고 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함.

주요사례

① 보존식을 보관할 때 실제 제공한 급간식 중 일부를 보관하지 않음

보존식은 제공한 모든 급·간식(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이유식 포함)을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 144시간)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매일 점심에 제공되는 김치의 경우에도 보존식으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에서 가져온 이유식, 대체음식(기존 음식 소진으로 별도 추가된 음식, 식품 알레르기 관련 대체 제공된 음식 등)은 평가 시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이유식 삭단에 따라 이유식 제공 후 관련 기록을 누락함

어린이집에서 이유식을 먹는 영아가 있으면 영아용(이유식) 식단을 계획하고 제공기록도 누락 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유식 단계의 영아가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급·간식을 모두 가정에서 가져올 경우, 학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감안하여 평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체크

보존식 보관 시, 제공된 모든 급·간식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나요? ☐

영아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이유식)을 수립하고 제공기록을 관리하고 있나요? ☐

7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내용

☑ **3-2-1-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 어린이집 차원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함.
- 보호자에게 안내한 자료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방법(대체음식 제공 등)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있음.
-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등)이 있음.

주요사례

① 어린이집에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가 있으나 제거식을 실시한 기록이 누락됨.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 해당식품을 식단으로 제공해야 경우,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 내 대처방법(대체식 또는 제거식)대로 조리와 배식을 실시한 후 이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식단에 포함된 날에 해당반찬을 빼고 급식을 제공하였다면, 보육일지나 운영일지 등에 "제거식 실시" 등으로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② 식품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전혀 없음.

식품 알레르기는 출생 후 1-2년 사이에 발병하므로, 영유아가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알레르기 여부를 구두상 파악했다 하더라도, 다수가 보육되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알레르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영유아별로 알레르기 질환 조사를 서면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대처방법(대체식 또는 제거식)에 따라 조리와 배식을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누락 없이 관리하고 있나요? ☐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있나요? ☐

8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내용

☑ **3-2-2-②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필수

- 어린이집 내의 식품(식자재 등)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이 경과된 것이 전혀 없음.
  - 평정대상: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이 표기된 모든 식품(수입식품 포함)
-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자재는 평정대상에 포함됨.
-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식품에 한함), 커피는 제외
-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여야 함.

주요사례

① 조리실 수납장에 유통기한(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있음.

조리실은 식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는 유통기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미술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밀가루 등이 조리실에 있다면 “미술재료용” 등 용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리실이라는 공간특성을 반영, 일반적인 식자재로 간주하여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사용하고 있는데, 유치원용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가 확인됨.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지자체 승인이 있을 경우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보육사업안내). 이때 해당 조리실 내 유치원용 식자재를 포함한 모든 식자재가 평정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치원용이라고 별도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어린이집 조리실 식자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통기한 준수 여부를 평정합니다.

핵심체크

- **어린이집 내의 식품(식자재 등) 중 유통기한(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있나요?** ☐
- **수업자료(미술자료 등)로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있나요?** ☐

9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내용

☑ **3-2-2-④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식기류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은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도마와 칼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식수대와 컵 등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함.
- 식수대에 청결한 컵을 비치하여 사용 전후로 구분하거나, 영유아별로 개별 컵을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청결 상태를 확인, 관리함.
- 영아를 위하 수유용 젖병과 젖꼭지는 1회 사용 후 소독하여 관리함.

주요사례

① 앞뒷면 색깔이 같은 도마 하나를 육류용과 어류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함.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도마와 칼을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모양과 색깔이 동일하여 용도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관리미흡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마가 앞뒷면의 색깔이 다르고,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감안하여 평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관련 [별표 8]

○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관련 [별표 1]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핵심체크

식기류와 조리실 비품은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

도마와 칼은 최소 3가지(육류, 어패류, 기타 채소류용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나요? ☐

10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내용

☑ **3-2-3-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음.
  - 전용 앞치마(위생복), 전용 머릿수건(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위생화)이나 덧신을 착용함.
  - 단, 실내 공간과 조리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조리 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음.
- 조리 중(전처리 작업 포함)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맛보기는 별도 숟가락을 사용함.

주요사례

① 조리 시, 머릿수건을 착용하지 않음.

조리 공간 내에서 음식물을 다루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원장)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식 뿐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오후 간식을 보육교직원이 조리실에서 데우는 경우도 조리과정에 해당되므로 이때에도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② 조리 중, 조리사가 맨손으로 재료를 손질함.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적인 조리를 위해 조리 전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처리 작업은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조리 중이거나 조리를 완료한 식품은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맛보기는 별도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나요?** ☐
- **조리 중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맛보기는 별도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나요?** ☐

11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내용

☑ **3-2-3-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필수

-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함.
  - 데친 채소류, 삶은 고기, 육수 등도 조리의 단계를 거쳤으므로 당일 소모 원칙을 준수해야 함

주요사례

① 데친 시래기를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급식 시 조리하여 제공함.

데친 채소류, 삶은 고기, 육수 등은 조리의 단계를 거쳤으므로 당일 소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냉동보관은 장기간 보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가일 전에 삶거나 데치는 등의 전처리를 한 음식을 냉동실에 보관할 경우 당일 소모 원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평정합니다.

② 영유아 급식으로 제공하고 남은 멸치볶음을 교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관함.

어린이집에서는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해야 하므로, 배식을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에게 제공되는 반찬류에 대해서도 조리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김치류(김치소, 김치양념 포함), 깻잎지, 장류, 누룽지, 장아찌(무말랭이), 젓갈류 등은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체크

-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
- 전날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되는 경우는 없나요? ☐

12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주요내용

☑ **3-3-1-①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필수

-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음식을 다루기 전, 바깥놀이 후, 변기 사용 후, 배변지도 후(기저귀 갈이 등)
- 기저귀 갈이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손 씻기의 대안으로 중간 시점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음.

주요사례

① 교사가 여러 명의 기저귀를 갈아준 후 손소독제만 사용하고 손을 씻지 않음.

교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를 위생적으로 보살피기 위해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영유아의 변기사용을 도와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기저귀를 연속으로 갈아주는 상황에서 중간 시점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교사가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 영유아에게 음식을 먹이기 전(점심식사, 오전·오후간식 전)
- 음식을 다루거나 먹고 마실 때
- 바깥놀이 후
- 변기 사용 후,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영유아의 변기 사용을 도와준 후
- 기타
  - 투약을 하기 전(특히, 안약 투약 전)
  - 상처를 소독하거나 밴드를 붙이기 전
  - 애완동물을 만진 후
  - 쓰레기통을 만지거나 사용한 후
  - 콧물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 손이 더러운 경우 등

핵심체크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나요? ☐

13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주요내용

☑ **3-3-2-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함.
-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함.
- 투약한 내용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함.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관련 기록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투약의뢰)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시간(횟수), 의뢰자명
    - (투약보고) 투약 여부, 투약자

주요사례

① 투약의뢰서에 필수기재사항 중 '용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하고, 투약의뢰서 내용에 따라 투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투약의뢰서에는 약의 종류, 용량, 시간, 의뢰자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누락이 있을 경우 투약의뢰서 관리 미흡으로 평정합니다. 다만, 부모에게 1회분 투약 양을 요청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감안하여 평정하고 있습니다.

② 투약보고 시 담임이 2명인 반에서 투약자명 대신 "O"라고 기재함.

투약은 영유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육교직원은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투약을 실시한 후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투약보고에는 투약여부, 투약자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투약자명 대신 "O"로 기재할 경우 정확한 투약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투약자명 누락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체크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투약 종류, 용량, 시간, 의뢰자명)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하고 있나요? ☐

투약한 내용을 기록(투약 여부, 투약자)하여 부모에게 보고하고 있나요? ☐

14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주요내용

☑ **3-3-2-④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 어린이집 내에 비상약품(의약품 포함)을 구비하고 있음.
- 실외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지참하여 활용함.
- 모든 약품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이를 경과하지 않음.

주요사례

① 어린이집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구비함.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영유아에게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건강 상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제품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발견할 경우 평가에서는 약품관리 미흡으로 평정합니다.

② 두 반이 각각 다른 장소로 바깥놀이를 갔으나 한반만 비상약품을 가지고 가지 않음.

견학이나 산책 등 외부활동 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교사는 '실외용 비상약품'을 지참하고 바깥놀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두 반이 동일 시간대에 각각 다른 장소로 실외활동을 간다면 '실외용 비상약품'은 각각 지참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어린이집 내에 비상약품을 구비하고 유효기간도 관리하고 있나요? ☐

실외용 비상약품을 별도로 구비하고,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지참하여 활용하고 있나요? ☐

15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내용

☑ **3-3-3-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 모든 영유아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 내역으로 확인 가능함.
- 모든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어 구비됨.
  - 필수기재사항: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의료기관, 보호자 서명

주요사례

① 일부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가 누락됨.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모든 영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고지, 안내한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원장은 안내 및 요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정통신문, 알림장 등)를 보관하고, 거부사유 등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② 응급처치동의서에 의료기관명이 누락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므로, 모든 영유아에 대해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동의서에는 필수 기재사항(보호자 비상연락처, 의료기관, 보호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등을 통해 응급 시 영유아가 이용하는 의료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핵심체크

- **모든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가 누락 없이 구비되어 있나요?** ☐
- **모든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나요?** ☐

16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주요내용

☑ **3-4-3-①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 등·하원용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음.
- 차량 내부에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가 구비되어 있음.
-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차량 내부에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고, 유효기간 내로 관리되고 있음.

주요사례

① 등·하원 차량에 탑승하는 영아 수 보다 영아용 보호장구(W1, W2) 수량이 부족함.

어린이집은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영유아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해 KC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36개월 미만(15kg 미만)인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W1, W2, 0그룹, 0+그룹, I그룹)를 탑승하는 원아 수만큼 마련하여 하고, 보호장구 W3, II그룹은 36개월 미만 영아 중 몸무게가 15kg 이상일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② 36개월 미만 영아가 차량에 탑승하나, 차량 자체에 설치된 유아전용 좌석에 별도 영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음.

어린이집은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해야 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영아 수에 맞게 영아용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하고 영아용 보호장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자체에 유아전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면, 36개월 미만 영아 탑승 시에는 별도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 **차량 내부에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가 영아 수에 맞게 구비되어 있나요?** ☐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차실 가장 뒷열 좌석부근에 설치되어 있고, 정상작동 하나요?** ☐

17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주요내용

☑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필수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 있는 성인(원장, 교사 등)이 동승함.
-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이 출발함.
-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은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영유아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함.
- 운전자 및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은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함.

주요사례

① 등·하원 차량에 36개월 미만 영아를 W2 대신 W3 영아용 보호장구 설치 좌석에 앉힘.

36개월 미만(15kg 미만) 영아는 안전을 위해 KC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장구(W1, W2, 0그룹, 0+그룹, I그룹)를 착용해야 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이라면 W3, II그룹 보호장구 착용도 가능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아가 차량 내 W2 영아용 보호장구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W3가 장착된 좌석에 탑승한다면 차량안전 미흡으로 평정합니다.

② 차량 내부에서 영유아 하차여부 확인 없이 트렁크를 열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누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영유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차실 가장 뒷열 좌석부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동승교사가 차량기사는 영유아가 하차한 후 차량 내부에서 모든 공간을 다시 확인한 후 확인장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모든 좌석 확인 없이 차량 뒤 트렁크를 열어 내부 확인 후 하차확인장치를 버튼을 누를 경우 차량안전 운행 미흡으로 평정합니다.

핵심체크

36개월 미만 영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 영아용 보호장구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가요? ☐

운전자 및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 하차확인 절차에 따라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확인장치 버튼을 누르나요? ☐

18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주요내용

☑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예방교육 포함)** 필수

-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 대상
    - 안전교육: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임용된 보육교직원
  -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주요사례

① 보육교직원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재난,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이수해야할 안전교육을 시기, 주제, 대상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에 계획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임용된 조리사, 차량기사 등이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입니다. 해당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원장, 보육교사 뿐 아니라 조리원, 차량기사, 사무원 등 임용된 기타 보육교직원도 모두 연 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나요?** ☐

19 3-5-3 안전설비를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주요내용

☑ **3-5-3-①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를 비상 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는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음.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임.
-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는 적재물이나 위험한 물건 등이 없어 비상 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음.
-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피난구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함.

주요사례

① 비상구 외부 개폐장치를 항상 자물쇠로 잠가놓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구 문을 내부에서 열 수 없는 경우, 비상구를 가구 등으로 막거나 통로에 짐을 쌓아둔 경우 비상 시 탈출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관리미흡으로 평정됩니다.

② 피난구 유도등이 하루 종일 꺼져있는 등 작동하지 않음.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 시 피난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해야 하므로 설치된 유도등은 항상 작동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유도등 전기콘센트를 제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로 되어있나요?** ☐
- **어린이집 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피난구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나요?** ☐

20 3-5-3 안전설비를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주요내용

☑ **3-5-3-③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음.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천장에 부착해야 함
  - 해당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 설치 불필요함
-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스누설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음.

주요사례

① 어린이집 조리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붙여두면 연기 등 화재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건물(1-3층)의 구획된 모든 각 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자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경보형감자기 설치 장소는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휴게공간 포함), 원장실, 사무실, 자료실, 현관,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 드레스룸, 복도, 계단 등으로, 반드시 천장(계단은 최상층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욕실이나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작동 우려를 고려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나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핵심체크

-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
-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천장에 부착되어 설치되어 있나요?** ☐

4

교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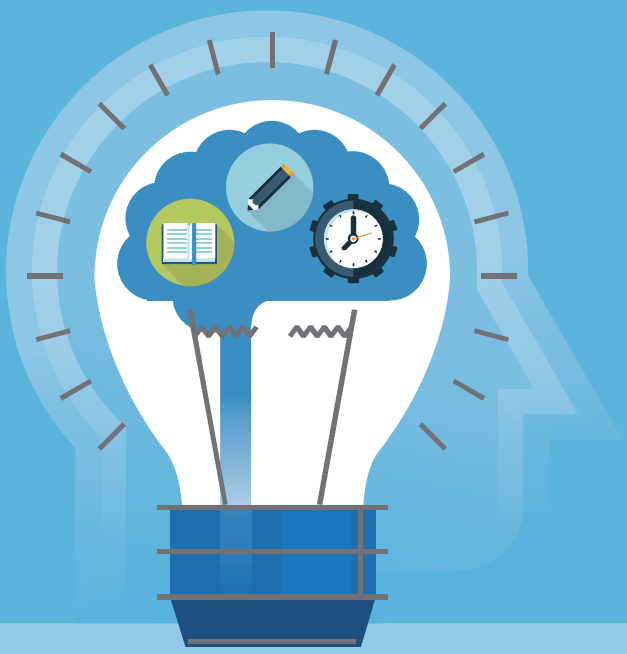

보육교직원의 역량은 보육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직무, 경력과 역량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성인용 공간 및 설비 마련,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기회 제공, 적절한 처우 및 복지 제공 등 보육교직원을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은 보다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영역에서는 원장의 리더십,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등 총 4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1 4-2-1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내용

☑ **4-2-1-①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함.
  -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활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교사실)이 마련되어 있음.
  -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음.
  -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교사실, 베란다, 조리실 등)에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탁자나 휴식용 의자, 쿠션 등의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주요사례

① 교사 휴식공간을 유희실 한쪽에 구성함.

교사 휴식공간은 교사를 배려하는 공간이므로 교사가 실제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해야합니다. 유희실이나 보육실은 영유아의 보육공간으로, 해당공간에 교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2019년 인가 어린이집으로 지하층에 교사실을 마련함.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환경이나 비상대비 등이 취약하므로 교사실은 지상층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년 인가 어린이집부터는 지하층에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층에 교사실 설치는 불가하며 그 이전 인가된 어린이집의 경우 양방향 대피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공간이 인정됩니다.

핵심체크

보육공간 외 기타 유휴공간에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지상층에 마련되어 있나요? ☐

2 4-2-2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내용

☑ **4-2-2-①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음**

-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이나 보육실이나 교사실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마련되어 있음.
- 사물함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교재교구 등의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해두지 않음.

주요사례

① 교재교구를 보관하는 자료장을 교사 개별 사물함으로 사용함.

사물함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재교구를 보관하는 자료장에 교사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교사 개별 사물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장 내에 칸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일부 칸에는 어린이집 물품을, 다른 칸에는 교사 개인 사물을 넣어 사용한다면 교사 개별 사물함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② 교사 개인별로 사물함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물함이 어린이집 비품으로 가득함.

교사를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내 교사용 사물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 등 어린이집용 비품을 보관할 경우 교사 개인사물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물함은 교사 개인용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체크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나요? ☐

3 4-3-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주요내용

☑ **4-3-1-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준수함.
  - 대상: 고용된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보수 관련 규정에는 임금, 경력,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의 보육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 자료가 있음.
-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함.

주요사례

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부 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함.

국공립과 같은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는 당해 연도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규정에 따라 호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호봉기준 미만이거나 최저임금만을 지급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담임교사가 순번을 정해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간외 수당이 미지급됨.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교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2023 보육사업안내」 475p 참조). 따라서 담임교사가 연장반 보육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반드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체크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준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나요? ☐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 보육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

4 4-4-2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내용

☑ **4-4-2-①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 원장이나 외부전문가가 일과 및 놀이 중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찰한 후 지원한 기록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음.
  - 대상: 담임교사
-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일시, 관찰자, 관찰내용, 평가, 지원 내용

주요사례

① 담임이 2명인 반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 관련 기록이 구분 없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됨.

원장 또는 외부전문가가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 해당 교사와 함께 토의 및 지원시간을 가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같은 반이라도 교사마다 관찰 상황 및 지도 내용이 다르므로 지원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두 명의 교사에 대한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 기록이 개별 교사 구분 없이 하나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교사별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정됩니다.

② 교사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및 지원 기록에 '지원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후 적절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시고,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는 일시, 관찰자, 관찰내용, 평가, 지원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상호작용 관찰 이후, 교사에게 적절한 제언을 하고 실제 교사에게 실시한 지원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체크

- **담임교사가 두 명 이상인 반인 경우에도 교사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이 각 교사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 **교사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

2023 사례로 펼쳐가는 어린이집 평가제

인　　쇄 : 2023년 8월

발　　행 : 2023년 8월

발 행 처 :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주연빌딩 3~6층
(전화) 1661-5666

인　　쇄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 복제 및 유출을 금함